일상감사의 범위(감사규정 제3조 제4항 관련)

1. 정관 및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
2. 기본사업계획의 수립 및 예산의 편성
3. 중요한 소송과 중재에 관한 사항
4. 예산의 전용, 이월사용과 예비비 지출
5. 직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
6. 병원의 직원 또는 환자 및 보호자로부터의 건의 및 요망사항과 기타 진정서에 대한 조치
7. 매건당 1,000,000원을 초과하는 경비지출, 다만 다음에 제시하는 것은 제외 한다.
   가. 사전에 감사의 협의를 받은 사항
   나. 정기적으로 지출하는 인건비
   다. 국내출장 및 부임여비
   라. 세금공과금 및 공공요금
   마. 월정액 고정경비
   바. 기타 부서장의 전결사항으로서 감사가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8. 전항의 경비중 매건당 500,000원을 초과하는 업무추진비와 잡비지출
9. 예정가격 10,000,000원을 초과하는 제계약의 체결 및 계약의 주요변경에 관한사항
10. 결산, 가결산 및 잉여금 처분에 관한사항
11. 자산관리지침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득하여야 되는 중요한 물자관리에 관한사항
12. 회계단위의 설정 및 폐쇄

※ **감사규정 제3조 제4항** 일상감사는 병원의 회계업무와 별표1에 정한 업무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그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는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.